

世界環境의 날과 住民運動의 方向

安基熙

〈國際環境問題 研究所長〉

I. 世界環境의 날의 의미

인간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있고 장래 닥쳐올 환경학적 위기를 방어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UN은 1972년 人間環境을 선언한데 이어, 1982년 세계자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을 선포한 바 있다.

즉 전 세계를 통한 인류의 복지와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人間環境의 보호와 개선」에 역점을 둔 '72년의 「스톡홀름」 선언과 생태학적 위기에 직면한 지구상의 생물자원의 부양능력을 고양하려는 「생물권 보호」를 주제로 한 '82년의 유엔총회 결의는 「하나뿐인 지구」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전 세계 일반대중들에게 경각심과 이해심을 크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

6월 5일은 열두번째로 맞이하는 세계환경의 날이다. 「環境章典」이라 일컫는 UN의 양대 환경선언의 의미는 세계사에서 시민들이 왕권을 무너뜨리고 왕과 시민이 대등한 지위에 서게 된 「權利章典」에 버금가는 큰 뜻을 지닌다. 즉, 環境章典은 자연정복사상에 근거해 온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라는 사고를 무너뜨리고 인간과 자연이 생물의 한 종으로서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는 일대 혁명적인 전환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환경선언의 실행대책을 위한 범세계적 노력은 UN 환경계획(UNEP)의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한 공식 또는 비공식 활동 이외에도 선진경제를 주도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나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등 공동

연대의 연구·교류활동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부나 민간 레벨에서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세계속에서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부응하려는 각국의 환경보전운동은 한 국가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정부·기업인·국민의 환경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보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헌법에 환경권을 명문화 하는가 하면, 환경법의 제정, 환경기구의 창설, 전 국민의 환경교육화를 위하여 교과과정의 설정은 물론 평생교육을 통하여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교육의 차원에서 비형식적인 교육훈련 및 환경정보의 새로운 주입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70년대 이후부터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과정에서 과도한 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되고 환경오염과 환경파괴의 양상이 생태계(ecosystem)의 자정작용(self-purification)에 의존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어 감은 물론 우리가 더 잡고 있는 생활환경에 이르기까지 환경의 질(environmental quality)을 보전하려는 범세계적 공동관심사로 부각되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本稿에서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민의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나라 헌법상 환경권의 명문화 배경과 내용을 언급한 후, 환경문제의 원인과 피해, 환경문제의 구조와 특성, 환경문제 해결의 제약변수를 개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주민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경윤리관의 확립, 환경교육의 사회화, 주민운동의 전

개 및 자료교류와 주민참여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II. 憲法上 環境權의 明文化

인류의 복지와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를 「…모든 정부의 책임이다」로 표명한 UN 인간환경선언의 원칙은 우리나라 헌법 제33조에 환경권을 명문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뜻은 모든 국민은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받았다는 권리를 선언함과 동시에 환경보전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공동 연대의 의무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이란 인간이 보다 좋은 환경을 향유할 권리이며, 환경권의 침해(공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다.

이러한 환경권이 우리나라 헌법에 명문화된 배경은 1960년대 말부터 지속적 고도경제 성장을 추구해 온 정부로서는 1970년대에 이르러 일부 공단 주변에서 오염의 피해가 야기되자 성장속의 고뇌(오염)를 피상적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고,

1972년의 UN 인간환경선언에 힘입어 1978년 전국적으로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환경문제는 전문가, 언론, 방송매체등의 영향을 힘입어 사회전반에 새로운 환경여론으로 비등하게 되었고 이러한 여론의 기적은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개정에 새로운 이슈로 등장되어 당시 헌법 개정 공청회의 공출인 24인중 18인(75%)이 환경권의 신설을 주장하여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서 헌법에 명문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종래까지 경제성장 우위정책에서 환경보전이라는 새로운 이념전환의 기본적 지렛대 역할을 해 줄것이 분명하다. 즉 전 국민들에게 환경권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환경보전운동이 스스로 민중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III. 環境問題의 原因과 被害

1. 原因分析

환경문제는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호작용하는 구성요소의 속성이나 요소 내부의 기능간의 마찰에서 발생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환경은 인간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중심으로 일어난 모든 환경문제는 인간의 속성 및 그 형태와 자연의 속성 및 그 제약변수의 상호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인간은 생태계의 한 종(種)에 불과하나 생식욕, 생존욕, 극복욕, 생활증진욕 등의 속성에 의하여 인구의 증가와 집중이 발생하고, 경제활동과 산업화가 이루어졌으며, 도시화와 생활양식의 변화 등이 이루어져 자연환경에 끊임없는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이에 반하여 자연은 에너지 보존법칙과 에너지 유동일정법칙, 포화·고갈(saturation or depletion)의 원리나 최소의 법칙 및 환경 용량에 관한 원리들에 의하여 저배되는 바 이의 균형 관계가 점점 상실되어 간다.

환경문제 원인의 주요변수는 다음과 같다.

- ① 인구(population)의 증가
- ② 자원의 고갈(poverty)
- ③ 경제성장의 지속
- ④ 과학기술의 역기능

위와 같은 요인들은 ① 자정능력(自淨能力)의 상실과 ② 공공성의 상실로 ③ 환경오염(pollution)과 환경파괴(disruption)를 야기하고 있다.

2. 被害

- ① 런던 스모그사건 : 1952년 12월 5~9일간 4,000여명의 사망자를 낸 대기오염 사건. 당시 역전층의 높이는 60m~150m에서 이루어졌다.
- ② 미나마따 사건 : 일본의 남단 미나마따(水俣)라는 작은 어촌에서 아주 작은 양의

유독물질이 바다속의 생물에 축적되고 그 축적된 해조류와 어류를 계속적으로 먹은 사람들의 전신이 마비되고 시력장애 등을 일으킨 처참한 전염병이 발생하여 발병자 121명 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 조사결과 유기수은의 일종인 메칠수은 생물 농축사건으로 판명되었다.

- ③ 러브 커널(Love Canal) 사건 :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로부터 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주택가 일각, 즉 20년전 폐기물을 단순매립하여 생긴 마을에서 땅속 유독가스에 전주민이 전염되어 사산아, 기형아, 미진아 등을 낳게 하여 1970~1980년 제 1, 2차에 걸쳐 1,037 세대를 긴급 이주시킨 폐기물의 충격적인 오염사건.
- ④ DDT 오염사건 :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살포된 농약에 의하여 전미국의 농산물과 목장우유 및 모유에 이르기까지 농약오염을 안겨준 사건.
- ⑤ 소음·진동의 정신질환 : 60dB 이상일 경우 생리적 영향을 주어 피로촉진, 혈압상승, 작업능률저하, 소화기능 감퇴, 정서와 신경불안, 100dB이 초과되는 경우 청각기능의 파괴, 동물의 실험 결과 장애 출혈성 위장을 가져오기도 하며, 척추신경을 마비시키고, 더 심한 경우 불임, 자기동료를 잡아먹으며, 심지어 죽어가기조차 한다.

IV. 환경문제의 구조와 특성

1. 문제간의 상호관련성

환경문제는 상호작용하는 여러 변수들에 의해 발생하므로 문제 상호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상호관련되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또한 문제끼리 상승작용을 일으켜 그 심각성을 더해 가면서 때로는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2. 광역성

환경문제는 개방체계적인 환경의 특성에 따라

공간적으로 광범한 영향권을 형성한다.

오늘날 런던의 스모그가 노르웨이의 대기를 더럽히고 알사스에 있는 프랑스 석탄광산의 배출물은 벨지움과 화란에 있는 라인강 하류의 물고기를 죽게 한다.

3. 시차성

환경문제의 발생과 영향의 발견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게 된다.

환경문제는 일단 표면화된 후에 규제를 해도 해로운 영향이 최종적으로 감소될 때 까지는 긴 시차가 존재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회복조차 불가능하게 된다.

4. 자기 증식성

자연계의 대기와 물은 스스로가 자정능력에 의해 정화될 수 있으나 과도한 오염물질이 혼입되면 환경용량(環境容量)이 초과하여 생태계의 부(負)의 「feed back」기능이 악화되고 정(正)의 「feed back」기능이 강화됨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자기증식성(自己增殖性)을 가져와 문제를 더욱 심각화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V. 환경문제 解決의 制約變數

환경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환경문제는 별개 문제들의 단순한 혼합물이 아니라 상호관련된 문제 복합체로 파악되어야 하며, 가치관의 문제까지 개입되므로 문제해결의 합리적 방법론을 정립하기란 그리 용이하지 않다. 또한 환경문제 '해결'에는 문제 자체가 지닌 복합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인간(주민)이 지닌 속성과 여러가지 사회적 조건에 의해 심화되므로 다음과 같은 제약변수를 국가와 주민들이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문제해결의 관건이 된다.

1. 관성의 지속

성장과 풍요를 추구해 온 경제윤리관에 입각한 기존의 가치체계·제조체계·기술체계는 그대로

지속하려는 관성(貫性)의 힘이 있어 생태학적 위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새로운 환경윤리관에 입각한 가치체계·제도체계·기술체계로 전환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최고정책결정 과정에서 환경윤리관에 입각한 배려는 이 문제해결에 접근하게 된다.

2. 서로 다른 가치관

주민의 다양한 가치관은 환경관리의 공적목표를 흐리게 하며 이렇게 상이한 가치관은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 기준에서도 종래처럼 경제성을 계속 앞세우게 되어 환경문제 해결을 제약하체된다. 능률과 이윤을 최대 목표로 하는 기업은 그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는 환경관리상의 형평성(衡平性)이라는 새로운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의 관점에서 생태계의 편익과 비용까지 포함된 의사결정 기준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함께 동의하는 환경지침을 구할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므로 음성에 찾아온 청새를 총으로 쏘아죽인 포수의 사냥에 대한 쾌감의 가치관과, 죽은 수컷을 찾아 깔깔 거리고 울어대며 무정란의 알을 낳고 있는 암컷의 처량한 소리에 슬픔을 함께 하는 주민의 가치관이 서로 다른 환경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것이다.

3. 사경제적 시장구조

기업이윤을 목표로 하는 사경제적 시장구조는 공익이나 복지 향상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환경문제는 이를 구조와 운영 그 제도의 결함의 부산물(副產物)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자유기업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법리의 결함과 외부비용의 처리가 어려운 시장구조가 지닌 결점은 환경문제의 심화 요인이 된다.

더구나 현재로서는 환경재의 외부화(外部化)의 내부화(内部化)를 위한 비용의 계량화가 힘들며 원인자(가해자)와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로

같은 집단에 속해 있다는 점이 어려운 과제가 된다. 또한 시장활동을 주로 하는 공공시설이나 이동 배출원이 모두 공권력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합법적인 활동에서 문제가 심화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점이다.

4. 시간적·공간적 한계성

인간의 시간적·공간적 시야는 전통적인 문화, 과거의 경험 또는 각 차원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시급함에 의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제의 공간적 폭이 크면 클수록 또는 시간적인 폭이 길면 길수록 그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적어진다.

환경문제는 국가간·지역간 경계를 초월하여 광범하게 발생하며, 시간적으로도 유동적으로 장기에 걸쳐 발생하므로 발생과 피해간에 시차가 있으므로 더욱 인간의 관심에서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

VI. 環境問題解決을 위한 住民의 役割

인류의 영원한 생존과 번영을 위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통합발전의 전략은 포괄적·종합적 접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환경문제 자체가 광범하고 대부분 경제정책과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집단체제의 욕구를 집단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므로 체제의 상호관련성, 장래예측의 불확실성, 한정된 수의 대안(代案)을 가진 계획의 한계성 등 어려운 과제를 지닌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이의 해결을 위한 주민의 새로운 가치체계의 확립은 매우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은 환경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자 또한 환경문제 해결의 주역도 바로 주민들 스스로 이기 때문이다.

그려므로 새로운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윤리관의 확립은 선결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그러기 위해서 전 주민들에게 환경권을 돌려주어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환경보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주민운동은 시급한 과제다.

인간의 목표와 양식은 현상에 대한 인식과 사고방식에 의하여 좌우되며 지식은 주민행동을 생산하는 제 1 차적 요소가 된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주민이 환경을 감지하는 양식과 환경관에 의해 발생한다 하겠으므로 주민의 가치관의 수정에 의해서 그 해결이 가능하다.

주민의 환경윤리관의 확립은 바로 사회여론으로 비화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것이 곧 정책에 반영된다. 이러한 정책은 바로 산업장의 기술체계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인간과 자연의 생산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체계 전환의 개혁수단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의 사회화

환경교육은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관계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환경문명 상태를 면하게 하고, 바람직한 환경관을 사회전체에 형성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일치된 의사의 조성과 환경관리의 행동준칙을 습득 시킴으로써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 교육은 기업 및 지역사회가 환경문제에 대하여 책임있는 행동을 취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즉 환경교육은 학교교육 뿐 아니라 인성(人性)에 있어서 제일 감수성이 강한 유아교육을 비롯한 가정교육·사회교육을 통한 평생에 걸쳐서 통합된 생애교육(Life-long integrated education)이어야 하고, 기능과 기술의 습득보다는 태도의 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자의 공동참여로써 각자의 부분환경과 전 지구적 환경에 대한 해독력을 높이고 각자는 일상생활 가운데의 체험을 통하여 각자의 부분환경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실천을 하도록 하며, 인류공동사회의 발전방향과 각자의 소망하는 환경의 질에 대한 가치정립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개의 주민과 사회집단으로 하여금 환경에 관련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의 주요목표는 벨그라드 협약에 다음과 같이 요약되고 있다.

- ① 자각 : 인식과 감수성을 얻도록 한다.
- ② 지식 : 인간의 절실한 책임의 소재와 그 역할을 파악하도록 한다.
- ③ 태도 : 환경에 대하여 강하게 느끼는 관심, 환경보전과 개선에 적극 참여하려는 동기를 얻도록 한다.
- ④ 기술 : 환경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돋는다.
- ⑤ 평가능력 : 생태학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미학적, 그리고 교육적 여러 요인에 비추어 환경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 ⑥ 참여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행동을 책임지도록 책임감과 절박감을 계발하도록 도움을 준다.

2. 주민운동의 전개

대기, 수질, 토양, 자연경관 등 환경의 질을 보전하는 문제는 최근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의 하나로 대두 되었고, 실제로 환경문제에 관한 정부나 주민의 관심은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여론의 일치와 개별화된 환경관을 집단화시키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에 의한 민중속에 뿌리를 내린 지속적인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이슈가 되어 환경정책에 반영이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주민의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은 일시적인 계몽활동의 성격으로는 부족하고 집단화된 조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3. 개발계획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많은 개발로 얻는 양적 성장에 비하여 환경의 질은 악화 일로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효율성이 다소 늦더라도 개발사업의 이익배분과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되는 대기·물 등의 자연공공재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일수록 더욱 중요시 된다.

최근들어 선진국들의 경우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위탁시설·자연보호 등의 환경정책 결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례들이 괄목할 만한 추세로 증대되고 있으며, 사실상 환경보전에 관한 정부의 공적 결정행위가 주민생활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중대하므로 환경행정에의 주민참여는 구조적·제도적으로 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①환경보전을 위해 행정당국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가 ②개발계획에서 집행에 이르기 까지 시간, 비용, 투자의 자연, 손행의 산정문제 ③질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기준의 법령, 기구, 기타 제도의 개폐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역개발에 의한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지역주민의 노력은 행정당국의 환경정책 결정은 물론 입법활동의 규제, 사법부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는 경향에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참여의 동기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주민들의 건강과 사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환경관리에 직접 참여한다는 자기충족적 (self-fulfilling) 이유다. 둘째, 환경문제에 대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정당화 시키려는데 부여된 상징적 (symbolic) 이유다. 셋째, 개발사업의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제도적 (institutional) 이유다.

즉, 당국이 돌이킬 수 없는 편견이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전제에서다.

주민의 참여는 참여를 통한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자가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에 참여한 만큼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는 데서 중요한 사회심리학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VII. 結 語

한 나라의 생산성이 높고 낮음은 근본적으로 삶의 바탕을 이루는 자연환경에서 비롯되는 바, 자연환경자원의 생산성의 저하하는 문제는 머지

않아 우리사회가 당면할 과제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이 치루어야 할 대가는 너무나 엄청나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제한된 천연자원의 고갈, 국민의 생산의 욕의 저하, 고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저해 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며, 정의로운 사회욕구의 국민적 욕망, 단조로운 생활로 부터 탈피하여 여가에 대한 정서 순화,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의 욕망등에 대한 염려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세대 즉 우리 주민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것이며, 현재인은 물론 다음 세대까지 영원히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도 우리 주민 스스로인 것이다.

즉, 환경이 풍요로울 때 그 이로움을 누리는 것도 주민이요, 환경이 위기에 처할 경우 그 고뇌를 겪어야 할 주역도 바로 우리 주민 스스로이기 때문이다.

환경의 날을 맞아 한번더 범국민적 환경보전운동을 제언하는 바이다. *

環境保全상담안내

社團法人 環境保全協會에서는 環境保全에 관한 技術指導 및 啓蒙事業의 一環으로 「環境保全相談室」을 設置運營하고 있는바 本相談室에서는 政府施策弘報, 関係法令解說 公害防止關聯技術相談 自家測定方法指導 其他建議 및 隘路問題相談등을 無料實施하고 있어 오니 많은 活用을 바랍니다.

상담실 전화번호 (753) 7640 (753) 7669
(754) 5836

社團法人 環境保全協會

알 림